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45

발 의 자 : 최정훈의원 외 2인

발의일자 : 2002. 3. 4.

1. 개정이유

○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한 적극적인 목적이 중요한데도 제1차 정례회기간인 7월중에 실시함으로써 업무의 연관성이 결여되고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어 행정의 일관성·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,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(안 제4조제1항)

나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.(안 제4조제2항)

다.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부의 된 각종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 (안 제5조제1항)

라.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의결 및 기타 의회에 부의 된 각종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(안 제5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○ 경상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

○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

○ 지방자치법및동법시행령

4. 본 문 : 붙임 참조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4조제1호중 "매년 7월 5일"을 "매년 7월 10일"로, 7월, 8월중을 9월, 10월로 하고 동조 제2호의 "매년 12월 10일"을 "매년 12월 1일"로 한다.

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개정)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중 "제1차 정례회"를 "제2차 정례회"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집회) (생략) 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·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 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0일에 집회한다.	제4조(집회) (현행과 같음) 1. _ _ _ _ _ _ _ _ _ _ _ 7월 10일 _ 9월·10월 _ _ _ _ _ _ _ _ _ 2. _ _ _ _ _ _ _ _ _ _ _ 12월 1일 _ _ _ _ _ _ _
제5조(심의)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	제5조(심의)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